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7.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440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6.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 나. 상정의결
 -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7. 14.)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공공기관의 설립 및

육성 등) 및 제12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7조

- 필요성 :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세곡마루도서관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도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 대상 사무 :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 범위
 - ▶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
 - ▶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영어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포함)
 - ▶ 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 ▶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 대 상 :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일원동 611-1)
- 면 적 : 733.65㎡
- 완공일 : 2021. 7월(예정)

○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위탁예산 : 연간 730,664천원[구비 100%]

(단위:천원)

계	인건비(7명)	운영비	행사비	도서구입비	환경개선
730,664	413,773	170,891	20,400	75,600	50,000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개포8단지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개포스포츠문화센터)은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구)공무원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함.

- 사업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2017. 7. 6.: 개포8단지아파트 개발계획(안)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33호)

2018. 2.22. : 개포8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착공신고

2020. 2.18. : 커뮤니티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 제기(재건축사업과-2657호)

- 아파트 주변 많은 학교가 있으나, 관내 타 지역에 비해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하므로, 커뮤니티 시설(기부채납)의 창업지원센터를 통합형 교육·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요청

2020. 5.19. : 커뮤니티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 재요청(재건축사업과-7724호)

- 구청장 요청사항: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토록 할 것

2020.12.31. : 개포8단지아파트 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강남구고시 제2020-204호)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세부용도 변경[공공청사(창업지원센터) ⇒ 공공청사(문화센터 등)]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커뮤니티 지원시설 용도가 창업지원센터에서 문화센터 등으로 세부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디에이치자이개포 기부채납 커뮤니티 지원시설 현황은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총면적은 9,682.27㎡ 임.

용도	위치	규모	연면적	준공
공공청사 (문화센터 등)	113동	지하2층/지상1층	9,682.27㎡	2021. 7월

- 기부채납시설 중 가칭)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733.65㎡ 그 밖의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시 설	면적(㎡)	관리부서
지상1층	다함께키움센터	685.79	여성가족과
	평생학습시설	940.29	교육지원과
	체육시설	1,024.01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지하1층	공공형 실내놀이터	791.77	보육지원과
	영어특화도서관	733.65	문화체육과(책읽는도시팀)
	체육시설	1,138.72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공유공간	55.33	
지하2층	체육시설	1,261.32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공유공간(주차장)	2,602.73	
	공유공간(기계·전기실)	448.65	

-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5년간 (2021.7.20.~2026.7.19.) 강남문화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 제27조의 관리위탁¹⁾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지방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위탁하는 업무형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관리위탁을 하려면 관리위탁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 위탁료를 산정²⁾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³⁾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강남문화재단에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제2항에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⁴⁾(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제4항에서는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

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4. 위탁료 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평가심사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임.

- 한편, 일원동 인근 아파트(루체하임)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는 바 개포8단지에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가칭)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 끝.